

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53조 및 「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가 다음과 같이 집회됨을 공고합니다.

1. 집회일시 : 2023년 11월 20일(월), 10:00
2. 집회장소 : 양양군의회 본회의장(2층)

2023년 11월 14 일

양양군의회 의장 오 세 반

